
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
(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)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 : LUBCHEM VALVE 8063 B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권고용도 : 윤활제
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제조자정보 : (주)하이플렉스
- 공급자정보 : (주)하이플렉스
- 주 소 :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8-15
-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 : 042) 933-5670
- 담당부서 및 연락처(MSDS 작성자) : 기술연구소 하태일

2. 유해 위험성

가. 유해 위험성 분류

- 급성 독성 물질 (경구): 자료없음
- 급성 독성 물질 (경피): 자료없음
- 급성 독성 물질 (흡입): 자료없음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: 구분 2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: 구분 2A
- 발암성물질 : 미국 산업안전보건청(OSHA) : 아니오
미국 국립독성계획단(NTP) : 아니오
국제 발암성연구소(IARC) : 아니오
- 생식독성 물질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(1회 노출)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-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: 자료없음
-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: 자료없음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- 그림문자



- 신호어 : 경고
- 유해 위험 문구 :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
- 예방조치 문구
 - 예방
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.
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
보호장갑, 보호의, 보안경,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
 - 대응
정해진 치료를 받으시오
오염된 의복을 벗고 다시 사용전 세탁하십시오.
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

피부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, 주의를 받으시오
 눈에 묻으면 몇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

- 저장
밀봉하여 저장하시오
- 폐기
관련 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, 용기를 폐기하시오

다. 유해.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
 (제품에 대한 NFPA 자료가 없으므로, 구성 성분별 자료를 기재함)

* 각 구성성분별 긴급유해성 정보

물질명	NFPA지수	보건	화재	반응성
1.CASTOR OIL		1	1	0
2. Polytetrafluoroethylene		1	1	0
3. POLYETHYLENE		2	1	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번호	함유량(%)
1. CASTOR OIL	RICINUS OIL	8001-79-4	50~70
2. Polytetrafluoroethylene	-	9002-84-0	30~50
3. POLYETHYLENE	ETHENE, HOMOPOLYMER, OXIDIZED	68441-17-8	5~15

4. 응급조치 요령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- 흐르는 깨끗한 물로 15분이상 세척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-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- 오염된 피복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.
 - 자극, 통증등 기타 증상 발생시 전문의에게 노출부위에 대한 진찰을 받으시오.
- 다. 흡입했을 때 :
-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 - 호흡하지 않을 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.
 - 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시 흡입호흡법을 실시하지 마시오.
 - 일방판막이 장착된 포켓 마스크나 다른 호흡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 하시오.
 - 호흡이 곤란할 시 산소를 공급하시오.

-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.
-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

라. 먹었을 때 :

- 구토를 시키지 말고 구토 시는 머리를 엉덩이 아래로 숙여 폐 흡입을 방지 할 것.
-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, 즉시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.
-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전문의로부터 받을 것.

마.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/영향 :

- 흡입: 단기간노출-구역, 구토, 설사, 등 장기간노출-피부장애, 등
- 눈 접촉: 단기간 노출-자극

바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:

-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소화제

- 적절한 소화제 :
 -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, 아산화탄소, 일반적인 포말
- 대형 화재 시 :
 -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 할 것.
 -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고, 적절한 보호구를 화재 상황에 따라 사용 할 것.
 -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열분해생성물 :
 - 아산화탄소, 유독 탄소화합물, 질소화합물
- 화재 및 폭발 위험 :
 -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.
 - 폭발성 증기/공기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
다.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
-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시오.
- 진화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살수하여 용기를 냉각시키시오.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:

- 위험하지 않은 경우만 누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.
- 발생 증기량을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릴 것.
-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기타 적절한 보호구/보호의/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할 것.
- 피부접촉을 피할 것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

- 유출이 적은 경우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흡수시켜 처리할 것.
- 대량의 유출인 경우 뚝을 쌓아 가두어 두고 관계기관에 연락할 것.
- 하수를 통해 자연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.
- 무단소각을 금할 것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 :

- 모래 등에 흡착시킨 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할 것. 다량의 경우 용기, 펌프 등으로 회수한다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 :

-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계법에 따라 저장. 취급할 것.
- 화기에 주의하고 화염 불꽃, 고온물체와의 접촉을 피할것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(피해야 할 조건 등) :

- 옥내의 냉암소에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것.
- 옥외 보관 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특히 고온에 주의 할 것.
-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강산화제, 산과 접촉을 피하시오.
- 옥외 또는 격리된 장소에 저장하시오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(제품에 대한 노출기준 및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가 없으므로, 구성 성분별 자료 기재함)

1) CASTOR OIL

- 국내 규정 : 자료없음
- ACGIH 규정 : 자료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없음

2) Polytetrafluoroethylene

- 국내 규정 : 자료없음
- ACGIH 규정 : 자료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없음

3) POLYETHYLENE

- 국내 규정 : 자료없음
- ACGIH 규정 : 자료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

- 연속 작업시 증기를 흡입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하여야한다.
- 국소환기 : 연속 작업시, 또는 노출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할 것.
- 일반환기 : 추천함.

다. 개인 보호구 :

- 호흡기 보호 :
 - 일반 사용시 요구되지 않으나 연속 작업시나 노출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호흡보호구를 착용할것.
- 눈 보호 :
 - 적절한 보호구 및 보호안경을 착용하시오.
 -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- 손 보호 :
 - 지속적/장기적 노출 시 피부 장애가 예상되므로 고무/PVC제의 불투과성 보호장갑을

- 착용하도록 할 것.
- 적합한 내화학적 장갑을 착용하십시오.

○ 신체 보호 :

- 유출이나 옆지름 등의 위해가 있는 경우 불 투과성 고무/PVC제의 보호앞치마를 착용 후 작업하고,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 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.
- 적합한 내화학적 보호의를 착용하십시오.

9. 물리 · 화학적 특성

- 가. 외관 : 반고상 그리스
- 나. 냄새 : 비누냄새 및 석유계 탄화수소 냄새
- 다. 냄새 역치 : 자료없음
- 라. pH : 자료없음
- 마. 녹는점/어는점 : 자료없음
-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자료없음
- 사. 인화점 : 자료없음
- 아. 증발 속도 : 자료없음
- 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 : 자료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: 자료없음
- 카. 증기압 : 자료없음
- 타. 용해도 : 자료없음
- 파. 증기밀도 : 자료없음
- 하. 비중 : 약 1.25
- 거. N-옥탄올/물 분백계수 : 자료없음
- 너. 자연발화 온도 : 자료없음
- 더. 분해 온도 : 자료없음
- 러. 점도 : 자료없음
- 머. 분자량 : 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:
 - 상온상압에서 안정.

나. 유해 반응의 가능성 :

- 중합되지 않음

다. 피해야할 조건(정전기 방전, 충격, 진동 등) :

- 화기 및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.
- 마찰, 오염을 피하시오

라. 피해야할 물질 :

- 강산화제, 가연성 물질

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

- 질소 산화물, 탄소 산화물 등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호흡기를 통한 흡입 : 현기증, 떨림, 불규칙 심장박동
- 입을 통한 섭취 : 구토, 설사, 위통
- 피부 접촉 : 자극
- 눈 접촉 : 자극

나.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
(제품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, 구성 성분별 자료를 기재함.)

1) CASTOR OIL

- 급성 독성
 - 경구 : 자료없음
 - 경피 : 자료없음
 - 흡입 : 자료없음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자료없음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인체의 눈등에 묻었을 경우 일시적인 자극
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 : 자료없음
- 발암성 : 자료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없음
- 생식독성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- 흡인유해성 : 자료없음

2) Polytetrafluoroethylene

- 급성 독성
 - 경구 : 자료없음
 - 경피 : 자료없음
 - 흡입 : 자료없음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구분 2A(피부에 자극을 일으킴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구분 2A(눈에 자극을 일으킴)
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 : 자료없음
- 발암성 : 자료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없음
- 생식독성 : 자료없음
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흡입시 기도를 자극함
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- 흡인유해성 : 자료없음

3) POLYETHYLENE

- 급성 독성
 - 경구 : 자료없음
 - 경피 : 자료없음
 - 흡입 : 자료없음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구분 2A(피부에 자극을 일으킴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구분 2A(눈에 자극을 일으킴)
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 : 자료없음
- 발암성 : 자료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없음
- 생식독성 : 자료없음
-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 노출) : 흡입시 기도를 자극함
-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- 흡인유해성 : 자료없음

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
자료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- 가. 수생·육생 생태 독성 : 자료없음
- 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 자료없음
- 다. 생물 농축성 : 자료없음
- 라. 토양 이동성 : 자료없음
- 마. 기타 유해 영향: 자료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방법 :
 -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무의 허가를 받은자, 제 4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자, 제 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, 또는 해양 오염 방지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.
- 나. 폐기시 주의사항 :
 - 법에 따라 인가된 폐유 재생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 의뢰하여야 하며 절대로 임의 폐기하여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.
 -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 할 것.
 -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할 것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가. 유엔 번호 : 선박 및 항공 운송법에 미 규정(IMDG코드에 해당사항 없음)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 자료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선박 및 항공 운송법에 미 규정(IMDG코드에 해당사항 없음)

라. 용기등급 : 자료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 : 해당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○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포소화설비, 분말소화설비, 이산화탄소 소화설비, 할로겐화 물소화설비 등으로 질식소화 시킨다.

○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: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 시킬수 있으면 중단 시킬것
소량누출:모래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것.
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 할 것.
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여 출입을 금지할것.

15. 법적 규제현황

(제품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, 구성 성분별 자료를 기재함)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작업환경측정물질 : 해당없음

관리대상유해물질 : 해당없음

노출기준설정물질 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화학물질관리법 : 제품전체 정보 - 미규정

구성성분 정보 - 미규정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제품전체 정보 - 미규정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법률 제4363호: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○ 잔류성 유기화학물질 관리법 : 자료없음

○ EU 분류정보

- 확정 분류 결과 : 자료없음

- 위험 문구 : 자료없음

- 예방조치 문구 : 자료없음

○ 미국 관리 정보

- OSHA 규정 (29CFR1910.119) : 규제대상 아님

-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 : 규제대상 아님

-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규제대상 아님

-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규제대상 아님

-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규제대상 아님

- PIC 물질 : 자료없음

- POPs 물질 : 자료없음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

- KOSHA CODE W-05-2007 【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지침, 2007. 11】

- 한국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실무(교육교재 교육원2008-9-70)
- 산업안전보건법

나. 최초 작성 일자: 2016. 08. 01.

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: 0

라. 기타